

「참 든든한 기업저축통장」 상품설명서

- ◆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대출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규정에 의거, 저축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.
- ◆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 기록을 남기시는 경우,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**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**
- ◆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.

1 상품 개요 및 특징

- **상 품 명** : 「참 든든한 기업저축통장」
- **상품특징** : 예치금액, 예치기간 등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입출금 할 수 있는 예금 상품

2 거래 조건

☞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돋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증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 따릅니다.

(2024. 09. 23.기준)

| 구 분 | 내 용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|--|---|------|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|
| 가입대상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법인 및 개인사업자 | | | | | | | |
| 가입방법 및 해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영업점 ※ 인터넷으로 신규가입이 불가능한 상품입니다. | | | | | | | |
| 가입금액 및 기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제한없음 | | | | | | | |
| 이자지급시기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매분기(3,6,9,12월) 셋째주 토요일을 결산기준일로 하여 다음날 원금에 가산 예금일로부터 지급일 전날 또는 결산기준일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매일의 잔액을 기준으로 영업점에 게시한 잔액별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결산 익일에 원가 | | | | | | | |
| 예금자 보호여부 [해당] |  | <p>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“5천만원까지”(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 ※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, 한국은행, 금융감독원, 예금보험공사, 부 보금융기관의 예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</p> | | | | | | |
| 제한 사항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계좌에 압류, 가압류,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질권 설정 : 가능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| | | | | | | |
| 이자율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[변동금리] 이 예금은 금액 구간 및 금리가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 구간 및 금리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고시된 금리 적용 금액 구간별 차등이율 적용(최저 연3.0% ~ 최고3.2%)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341 1872 1452 1985"> <tr> <th>금액구간</th> <th>금 리</th> </tr> <tr> <td>1억 이하</td> <td>연 3.2%</td> </tr> <tr> <td>1억 초과</td> <td>연 3.0%</td> </tr> </table> | | 금액구간 | 금 리 | 1억 이하 | 연 3.2% | 1억 초과 | 연 3.0% |
| 금액구간 | 금 리 | | | | | | | |
| 1억 이하 | 연 3.2% | | | | | | | |
| 1억 초과 | 연 3.0% | | | | | | | |
| 수익률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일반과세대상자는 이자율이 계산된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 세율($15.4\%^{주1})$을 공제하여 지급 | | | | | | | |
| | <p>주1) 이자소득의 14% + 이자소득세의 10%(1.4%)를 징수</p> | | | | | | | |

| 구 분 | 내 용 |
|-------------|---|
| 위법계약 해지권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 하며,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.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,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(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) |
| 세제혜택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해당사항 없음 |
| 연계제휴서비스 | 해당사항 없음 |

3 |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

-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, 고객센터(1522-7900)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www.ibksb.co.kr)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저축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(국번없이 1332)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※ 계약체결 전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서명(날인)하시기 바랍니다.

본인은 IBK저축은행과 예금거래를 함에 있어 **상품설명서를 제공**받았으며,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예금거래의 **주요내용, 거래조건 및 유의사항**에 대하여 충분히 **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**합니다.

20

고객명 :

(서명/인)